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03

발의연월일: 2024. 8. 7.

발 의 자: 조은희·한지아·이성권

이만희 • 박정하 • 백종헌

신성범 · 김용태 · 서지영

이달희 · 김소희 · 최수진

권성동 · 강명구 · 윤한홍

김상욱 • 권영진 • 곽규택

강민국 · 김재섭 의원

(20일)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 명, 고립·은둔청년은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 상당수가 과도한 돌봄 부담이나사회적 고립 등으로 우울감을 겪고 있고, 일반 청년에 비해 사회 진출과 자립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 「청년기본법」은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이들의 자립을 뒷받침할 구체적 지원 수단과 추 진 체계가 미흡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지원사업 역시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정 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취업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 거지원, 금융생활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9조).
- 마. 국무총리는 관련 기관·단체를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11조).

법률 제 호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취약계층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 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년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 제5조(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 ①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상담・치료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정

서적 안정을 위하여 상담 ·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정신건강이나 중독치료 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등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적절한 치 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치료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금융생활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이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상담서비스, 금융사고예방교육 및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생활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문화활동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문화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활동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관련 기관·단체를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센 터(이하 "자립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 및 연구
- 2.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홍보
- 3.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 4. 취약계층 청년 자조모임 지원
- 5.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6. 그 밖에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국무총리는 자립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무총리는 자립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자립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자립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자립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약계층 청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자립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장
 -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 5. 「청년기본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장
 - 6. 그 밖에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약계층 청년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자립지원센터에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비밀 유지의 의무)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